

比丘尼 교육에 있어서 受具 과정의 변천과 정립

신 성 현

동국대 불교학과

〈요 약〉

불교 공동체인 승가에 들어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출가이며 다른 하나는 수구이다. 출가는 임시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수구는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구의 종교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의 종교라 할지라도 새로운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불교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수구를 통하여 불교 승단을 이끌어 갈 비구 비구니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붓다 당시 비구니 수구의 여러 형태와 정립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였다. 율장에서는 비구니 수구의 다섯 가지 형태가 설명되어 있다.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수구[師法受具]·백사갈마에 의한 수구[白四羯磨受具]·대리인을 보내는 것에 의한 수구[遣使受具]·잘 왔구나. 라는 말에 의한 수구[善來受具]·아라한이 되는 것에 의한 수구[上受具]이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수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가장 잘 완비된 것이 백사갈마수구이다. 백사갈마수구는 二部상가에서 두 번 행하며 비구상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붓다의 재세시 비구니 상가의 인원수가 늘어나면서부터 二部상가의 白四羯磨에 의한 구축계로 완비되었다.

핵심 주제어 : 비구니, 상가, 수구, 구축계, 백사갈마, 율장

I. 들어가는 말

세상 사람은 누구나 부모 형제 친족과의 인연을 맺으며 그가 속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물론 그 보편적 가치란 그가 속한 사회와 그의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명예·쾌락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간의 보편적 가치를 버리고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 바로 출가라고 불리는 종교적 행위가 그것이다. 부모, 형제, 친족과의 인연을 끊고, 가지고 있던 재산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생활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 출가하고 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두 개념의 세계가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소위 속세라고 불리는 세간 세계와 그 속세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출세간의 세계가 그것이다. 이 세간으로부터 출세간의 세계로 넘어서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세속생활을 영위하던 재가자가 세속생활을 버리고 출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미십계 사미니십계를 받고 사미(sāma 혹은 사미니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출가(pabbajā)라고 하며¹⁾ 다른 하나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나 비구니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受具(Upasampadā)라 한다. 불교 상가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은 바로 수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인 교법을 담아내는 상가의 새로운 구성원을 생산해 나가는 것이다. 올바른 과정을 거친 수구식의 집행이야말로 불교 상가의 존속을 위한 불수불가결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에 수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수구식은 불교 교단의 발달과 함께 여러 형태로 변화면서 정립되었다. 율장에서는 비구수구는 물론 비구니 수구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설명되고 있다. 특히 비구니 수구의 설명을 통하여 비구니 상가의 특색을 엿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비구니 수구의 종류 및 변천을 중심으로 비구니 수구가 어떻게 정립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II. 비구니 수구의 종류

율장에서는 비구니 受具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보이고 있다. 특히 『毘尼母經』에서는 5종을 들고 있다. 즉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수구[師法受具]·백사갈마에 의한 수구[白四羯磨受具]·대리인을 보내는 것에 의한 수구[遣使受具]·잘 왔구나, 라는 말에 의한 수구[善來受具]·아라한이 되는 것에 의한 수구[上受具]가 설명되어 있다.²⁾ 또한 『薩婆

1) 출가는 초기경전에서 집으로부터 집없는 상태로 출가한다.(agārasmā anagāriyam pabbajjati)라는 표현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2) 『毘尼母經』 권1(大正藏) 24, p.803중-하)

多部毘尼摩得勒伽』에서는 10종 수구를 들고, 이 가운데 비구니는 8重得과 遣使得, 2部僧得의 受具足戒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³⁾ 여기에서는 비구니 수구에 대하여 자세히 보이고 있는 『毘尼母經』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師法受具

師法受具는 마하파자파티가 8敬法을 수지함으로써 출가와 구족계가 이루어져 비구니가 된 것을 말한다. 율장에서는 마하파자파티와 아난이 붓다에게 여성의 출가를 간청하여 여성의 출가가 허락되어, 비구니 상가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때 붓다는 여성에게 출가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8敬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구니가 평생 지켜야 하는 8가지 조건을 말한다.

여성 가운데 최초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마하파자파티는 8敬法에 의한 수계로 비구니가 되었다. 하지만 비구니 상가의 성립 초기에는 8敬法이 바로 구족계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8敬法이 受具의 형태라는 것을 밝힌 것은 비구들이 이미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고 있던 당시였다. 비구들이 상가에서 백사갈마를 하고 있을 때에 마하파자파티의 구족계에 대해 의심을 하였다. 붓다가 8敬法을 받은 것 자체로 출가와 구족계가 함께 성립되었다고 밝힘으로써 구족계의 형태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하파자파티의 구족계에 대한 의심은 각 율장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十誦律』에서는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들이 마하파자파티의 화상과 아사리가 누구이며, 누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업신여김을 당하자. 붓다는 마하파자파티가 8重法을 수지할 때에 출가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였다.⁴⁾ 『五分律』에서는 모든 비구들이 마하파자파티에게는 화상이 없기 때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을 받자, 붓다는 마하파자파티가 8敬法을 받을 당시에 이미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⁵⁾ 『四分律』에서는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은 사람들이 마하파자파티와 500명의 釋種女들에게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자, 붓다는 이들도 계를 얻었다고 말하였다.⁶⁾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에서는 大世主喬答彌와 500명의 석가족 여인들이 8尊敬法을 받은 것으로써 출가와 近圓(구족계)을 허락하고 比丘尼性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출가와 구족계, 比丘尼性을 주게 하여 비구니들이 늘고 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⁷⁾

3) 『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 권5(『大正藏』 23, p.594중)

4) 『十誦律』 권40(『大正藏』 23, p.293중-하)

5) 『五分律』 권29(『大正藏』 22, p.187중)에서는 八不可越法을 받는 동시에 출가와 구족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6)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6상-중)

7)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권30(『大正藏』 p.351하)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8敬法에 의해 구족계를 받은 마하파자파티가 화상이 없다는 이유로 구족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자, 붓다가 8敬法을 받음과 동시에 출가와 구족계가 함께 성립된 것임을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500명 釋種女들의 구족계에 대해서는 8敬法을 받은 것으로 출가와 구족계가 성립되었다는 것과 비구상가에서 白四羯磨에 의해 구족계를 받았다는 것으로 異見이 나타난다. 『빨리울』과 『五分律』에서는 500명의 釋種女가 비구상가에서 백사갈마를 받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된 것으로, 다른 율장에서는 8敬法을 받아서 비구니가 된 것으로 달리 밝히고 있다.

2. 白四羯磨受具

白四羯磨受具는 二部상가에서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구족계는 비구니 상가가 성립된 후 비구니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비구니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 행해진 수계갈마이다. 이는 또한 羯磨得, 二部僧得이라고도 한다. 이 受具는 백사갈마에 의해서 비구상가에서 행한 경우와 二部상가에서 두 번 행한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五分律』⁸⁾에서는 500명 釋種女들이 마하파자파티를 화상으로 하여 비구상가에서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수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00명 석종녀들은 처음에 출가하여 수계갈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구족계갈마를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붓다는 비구 상가에서 구족계를 받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500명 석종녀들은 한번에 3명씩 나누어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한번에 4명이 구족계를 받을 경우에는 구족계를 얻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四分律』에서도 백사갈마를 시작하게 된 인연담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여인이 수계를 받고자 하여 다른 비구니가 그 수계자를 데리고 붓다의 처소로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 辱과 희롱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붓다는 비구니가 출가와 함께 大戒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⁹⁾ 이러한 인연으로 붓다는 비구니의 구족계 형태를 바꾸어 二部상가에서 백사갈마에 의한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 백사갈마는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는데, 수계갈마를 현전상가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구니들이 비구의 住處에서 멀지 않는 장소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비구니들은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면서 受具足戒를 할 수 있는 것이다.

『毘尼母經』에서는 백사갈마수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구족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五處가 있어야 만족함을 얻는다. 첫째는 和上이 여법해야 하고, 둘째는 阿闍梨가 여법

8) 『五分律』 권29(『大正藏』 22, p.186중), 『摩訶僧祇律』 권36(『大正藏』 22, p.514상-중)에서는 闍陀夷 闍陀와 波羅陀波闍陀와 闍陀의 어미 등 500명의 석씨 여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9)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3하)

해야 하고, 셋째는 7인의 상가가 청정해야 하고, 넷째는 갈마가 성취되어야 하고, 다섯째는 衆僧이 화합하여 與欲을 해야 한다.¹⁰⁾

이상은 백사갈마수구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 수계갈마의 계단은 三師七證의 10인으로 구성되며, 三師는 여법한 화상과 갈마사, 교수사를 말하며, 七證은 7명의 증인을 말한다. 변방에서는 10이 아닌 5인의 상가만으로도 受戒羯磨를 할 수 있다.

三師의 자격과 역할은 중요하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화상은 범람 12세를 구족해야 하며, 제자를 교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비구니는 제자를 두면 2년간 二法(教法과 衣食)으로 제자를 攝護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화상은 수계자에게 衣鉢을 구해주고, 10인의 상가를 구하고, 갈마사를 구하고, 교수사를 구하고, 상가에 추천해야 한다.¹¹⁾ 갈마사는 수계갈마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총명하고 유능해야 한다. 갈마사는 먼저 상가에 의제를 말하고, 찬반 여부를 묻는 羯磨說을 말해야 한다. 갈마사는 10인의 상가가 침묵을 하면 수계자의 受具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수계갈마를 結하고, 신참비구니에게 8바라이와 3依法 혹은 4依法를 평생도록 지킬 것을 말해야 한다. 교수사는 教戒師 또는 空靜處教師라고도 한다. 교수사는 10인의 상가에서 지원자나 추천을 받아서 白二羯磨로 유능한 자를 선임한다. 교수사의 역할은 수계자가 비구니가 되는 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수계갈마의 과정에서 수계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진실한 대답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7명의 증인이란, 수구식에 참석하여 그 의식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감독하며 갈마의 유효성의 증명하는 이들이다. 이 밖에 수계갈마의 과정에서 수계자에게 衣鉢의 수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각 율장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빨리율』은 의식을 하기 전에 衣鉢을 수지시키고, 『十誦律』은 尼羯磨師가 정학녀에게 衣鉢을 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四分律』과 『五分律』은 교수사가 衣鉢의 수지를 가르치고, 『摩訶僧祇律』은 교수사의 교계가 끝난 다음에 수계자가 계단에 나아간 부분에서 계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

또한 수계갈마는 상가의 중요한 행사이므로 현전상가의 전원이 출석을 해야 한다. 만약 출석을 하지 못하면 대리인에게 欲을 주어[與欲] 상가로부터 결석을 인정받아야 하며, 불참석자는 상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갈마는 二部상가에서 백사갈마에 의해 두 번 행해진다. 먼저 10인의 비구니상가에서 구족계를 받고, 그날 비구상가에 가서 수계갈마를 청하여 10인의 상가에서 구족계를 받는다.

10) 『毘尼母經』 권1(『大正藏』 24, p.806중)

11) 『摩訶僧祇律』 권30(『大正藏』 22, p.472상)에서는 화상의 역할에 대해서 “和上尼는 衣鉢을 구하고, 衆을 구하고, 2戒師를 구하고, 空靜處教師를 구하고, 衆僧에 推與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12) 平川彰·석혜능 譯, 『원시불교의 연구』(서울; 민족사, 2003), p.541.

3. 遣使受具

遣使受具는 대리인을 보내 비구상가에 가서 구족계를 받게 하여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비구니의 구족계는 二部상가에서 구족계를 받아야만 성립된다. 遣使受具는 二部상가에서 백사갈마를 통한 수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족계의 형태이다. 비구상가에 가서 구족계를 받아야 하는 수계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 염려하여 대리인을 보내서 구족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율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빨리율』에서는 웨살리의 창녀였던 아다까시(Adḍhakāsi)가 비구니상가에 출가를 하여 비구니가 된 다음 규정에 따라 비구상가에서 구족계를 받기 위해 사위성에 계신 붓다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그녀의 범행을 파하려는 악한이 출몰하여 붓다에게 갈 수가 없었다. 붓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다른 비구니가 비구상가에 가서 수계자를 대신하여 구족계를 받아도 좋다는 규칙을 제정하였다¹³⁾고 한다.

『十誦律』에서는 半迦尸의 출신과 용모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半迦尸는 가시국의 어떤 바라문의 딸로서 용모가 빼어나게 단정하였는데, 王園精舍로 출가를 하였다. 여러 악한자들이 半迦尸의 출가 소식을 듣고 납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관가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구족계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납치를 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는 모든 비구니들이 국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구니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전해 듣고 붓다에게 아뢰자, 붓다는 半迦尸 식차마니 대신에 대리인을 보내어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 또 있다면 역시 대리인을 보내어 비구상가에서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하였다. 비구상가에서 구족계의식이 끝나면 대리인은 비구니 상가로 와서 수계자에게 갈마를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3依止法과 8墮法을 설명해주고, 다른 계법은 화상과 아사리가 점차 말해줄 것이라 말해야 한다.¹⁴⁾

『四分律』에는 舍夷拘梨의 비구니로서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비구상가로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 침범을 당한 비구니가 어떻게 구족계를 받았는지 말하고 있다. 붓다는 비구니 대중 가운데 白二羯磨로 清淨無難한 자를 대표자로 뽑아 비구상가에 보내서 수계자 대신 구족계를 받도록 하였다. 비구니 대표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비구상가로 가게 될 경우에는 두세 명을 뽑아서 함께 갈 수 있으며, 비구니 대표자는 비구상가에 가서 호쾌합장하고, 아무개 수계자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며 수계자의 화상이 누구임을 밝히고 수계를 청해야 한다. 이때 비구 상가는 비구니 대표자에게 수계자와 화상의 이름을 묻고, 二歲學戒를 배우고 청정한가의 여부를 묻는다. 질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면 비구 상가는 수계의식을 할 수 있는 10인의 비구를 뽑아 백사갈마에 의해 대표자에게 구족계를 준다. 수계의식이 끝나면 구족계를 받은 대표자가 비구니상가로 다시 와서 수계자에게 구족계를 받았음을 알려주면 二部상가의 구족계의식이 모두 끝나게 된다. 그러나 小小한 안면

13) Vinayaṭṭakā II, p.277. 平川彰·박용길 譯 『율장의 연구』(서울; 토방, 1995), p.617을 참조하였다.

14) 『十誦律』 권41(『大正藏』 23, pp.295중-296상)

으로 대표자를 보내서 수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⁵⁾

『摩訶僧祇律』에는 法豫 비구니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梵行을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하여 화상이 대신 가서 수계갈마에 참석하는 내용이 나온다. 비구니상가에서는 수계갈마를 하는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구족계를 받고, 비구상가에서의 수계는 화상인 법에 비구니가 제자 대신에 가서 一白三羯磨(=白四羯磨)에 의해 구족계를 받았다. 이와 같이 二部상가에서 수계갈마를 마치면 화상인 법에 비구니와 비구 갈마사가 함께 비구니 정사로 가서 수계자에게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며, 백사갈마와 無遮法과 二部상가에서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마쳤음을 알리고 나면 모든 수계의식이 끝나게 된다.¹⁶⁾

『五分律』에는 半迦尸라는 한 음녀[창녀]가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하였는데, 도적들이 잡아가려고 하여 멀리 떨어져서 백사갈마에 의해 10인의 비구니상가가 구족계를 주었다. 그리고 수계자는 비구니상가의 한 곳에 두고 10인의 비구니상가가 阿練若에 있는 비구상가에 가서 비구니 갈마사가 대표로 계를 세 번 청한다. 그러면 비구 상가는 백사갈마를 하여 10인의 비구니 상가에게 구족계를 준다. 갈마가 끝나면 10인의 비구니 상가는 비구니 정사에 다시 가서 수계자에게 호쾌합장을 시키고 다시 백사갈마를 하여 구족계를 준다. 이때 8墮法과 4譬喩法, 8不可越法, 4依法를 자세히 수계자에게 말해 주고, 그 밖의 모르는 것은 화상과 아사리가 말해 줄 것이라 말해야 한다.¹⁷⁾

이상에서는 遣使受具와 白四羯磨受具가 동시에 성립되고 있다. 각 율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으나 같은 인물이라 생각되며 수계자가 비구 상가에 구족계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거나 범행을 범할 것을 두려워하여 대리인을 보내 구족계를 受持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다. 수계자 대신에 보내는 대리인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四分律』은 비구니 중에서 白二羯磨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 비구 상가에 보내고, 『摩訶僧祇律』은 화상이 대신 가고, 『五分律』은 10인의 비구니상가가 비구 상가에 가서 비구니 갈마사가 대표로 구족계를 청하고, 『十誦律』은 특정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대리인을 비구 상가에 보내서 구족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毘尼母經』에서는 비구니의 遣使受具는 붓다 在世時에 오직 이 여인만이 받았다고 하며,¹⁸⁾ 『十誦律』에서는 이와 같이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 또 있을 경우에는 비구상가에 대리인을 보내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5)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p.926중-하)

16) 『摩訶僧祇律』 권30(『大正藏』 22, p.474상-중)

17) 『五分律』 권29(『大正藏』 22, p.189상-중)

18) 『毘尼母經』 권2(『大正藏』 24, p.807상)

4. 善來受具

善來受具는 붓다가 ‘잘 왔구나, 비구니여[善來比丘尼]’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善來受具는 붓다가 ‘잘 왔구나, 비구니여[善來比丘尼]’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毘尼母經』에서는 摩登祇女가 붓다타의 가르침에 의해 須陀洹果를 얻고 붓다에게 출가를 구함에 자연히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가사와 발우가 홀연히 몸에 갖추어져 구족계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장로니계』에서는 밧다 꺠다라께사(Bhaddā Kuṇḍalakesā)가 선래수구에 의해서 구족계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¹⁹⁾ 밧다 꺠다라께사는 사리뵈다가 붓다에게 인도하여 설법을 듣는 즉시 아라한이 되었으며, 붓다가 ‘오라, 밧다여’라고 함으로써 선래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²⁰⁾ 『撰集百緣經』의 『比丘尼品』에서도 善來具足戒를 받은 비구니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寶珠 · 善愛 · 白淨 · 須漫 · 靑蓮華 · 伽尸 · 이마 위에 진주가 있는 비구니 등이 붓다에게 구족계를 받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三明六通과 八解脫을 구족하였으며, 諸天과 世人의 敬仰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²¹⁾

5. 上受具

上受具는 붓다의 설법을 듣고 번뇌가 다하여 아라한이 된 것으로 수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障法에 관계없이 구족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長老尼偈』에는 사미니로서 아라한이 된 난다(Nandā) 장로니²²⁾와 식차마나로서 아라한이 된 순다리(Sundarī) 장로니²³⁾가 등장한다. 난다 장로니는 자신의 미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붓다가 여성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不淨觀을 닦아 육체의 무상함을 깨닫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고 한다. 붓다의 비구니 제자들 가운데 선정제일로 불리어지고 있다. 순다리 장로니는 아버지가 출가한 후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출가하여 식차마나로서 위빠사나를 증장하였고, 수행정진으로 지혜가 성숙하였으며, 분석적인 통찰력과 함께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고 한다. 난다와 순다리 장로니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사미니와 식차마나의 신분으로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구니는 20세를 충족하고 장법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다와 순다리는 사미니와 식차마나이지만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上受具에 의해 비구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長老尼

19) Therīgāthā p.134.

20) 백도수 譯, 『위대한 비구니』(천안; 불전주석연구소, 2007), pp.167-179.

21) 『撰集百緣經』 권8(『大正藏』 4, pp.238하-243중)

22) Therīgāthā p.132. 백도수 譯, 『위대한 비구니』(천안; 불전주석연구소, 2007), pp.140-149.

23) Therīgāthā pp.153-156. 백도수 譯, 『위대한 비구니』(천안; 불전주석연구소, 2007), pp.369-380.

偈』와 주석서에서는 그들의 수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나서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구니의 수계가 여러 형태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이 受具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마하파자파티가 받은 師法受具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그리고 『Pali율』과 『五分律』에서 밝히고 있는 오백 명의 釋種女가 마하파자파티를 화상으로 비구상가에서 받은 백사갈마수구가 두 번째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에서는 8敬法에 의해 구족계를 받은 마하파자파티와 오백 명의 비구니들이 다른 사람에게 출가와 구족계와 比丘尼性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백사갈마수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 율장에 의하면 백사갈마수구가 두 번째로 행해졌다는 것인데, 비구상가로부터 받았다는 백사갈마수구와 비교할 때 그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어렵다. 나머지 다른 형태의 受具는 붓다의 재세시에 행해졌지만,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비구의 경우는 선래수구가 먼저 행해졌지만, 비구니의 경우 善來受具와 上受具는 정해진 시기에 행해진 것보다는 그들이 출가함에 따라 붓다가 임의로 구족계를 주었을 것이다. 遣使受具는 백사갈마수구가 행해진 후에 아다까시(Aḍḍhakāsi, 半迦尸) 비구니에게만 한 차례 행해졌던 특수한 경우의 수구라고 한다. 白四羯磨受具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가장 잘 정비된 형태이며, 비구니상가가 독립적으로 행할 수 없는 갈마이다.

III. 백사갈마수구의 과정

비구니의 수계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가장 잘 완비된 것이 백사갈마수구이다. 백사갈마수구는 二部상가에서 두 번 행하는데, 비구니의 受具는 비구상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구니는 제자를 두려면 우선 상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가의 허락은 현전상가에서 白四羯磨로 받는다. 수계자는 二歲學戒를 받은 식차마나로서 20세가 되었거나 曾嫁女로서 12세가 되었다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계자는 障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화상이 있어야 하고, 衣鉢을 구족해야 한다. 백사갈마수구의 과정은 『四分律』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비구니가 사미니를 제자로 둘 경우에는 비구니상가의 전원에게 알리고 나서 삭발을 해야 한다. 비구니상가에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머리를 깎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상가는 승인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개의 머리를 깎아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알립니다.²⁵⁾

2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권30(『大正藏』 24, p.351하)

25) 『四分律』 권22(『大正藏』 22, p.755중),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3하)

이와 같이 삭발은 白羯磨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가에 알리기만 하면 삭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가를 하려고 하면 상가에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상가는 승인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개를 출가시켜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²⁶⁾

이와 같이 상가에 알리고 나서 상가로부터 출가를 허락받으면 출가자에게 가사를 입혀주고, 右膝着地 합장시키고 3歸依를 다음과 같이 외우게 한다.

저 아무개는 佛法僧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붓다를 따라서 출가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이고, 如來無所著等正覺은 저의 세존이십니다.

출가자는 이와 같이 세 번 반복해서 말을 해야 한다. 출가의식이 끝나면 출가자에게 10戒를 준다. 10戒를 받은 사미니는 식차마나가 될 때까지 비구니상가에 거주하면서 비구니의 지도를 받는다. 사미니는 18세가 되면 정학녀가 되어 2년 동안 六法을 배워야 한다. 우선 비구니상가에 二歲學戒를 다음과 같이 청해야 한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상가에 二歲學戒를 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바라옵건대 상가는 저를 가없이 여기셔서 저에게 二歲學戒를 주십시오.²⁷⁾

이와 같이 세 번 청하면 사미니를 갈마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보이기만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워 놓고, 상가에서는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白四羯磨²⁸⁾를 하여 二歲學戒를 준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상가에 二歲學戒를 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만약 상가는 때에 이르렀다면 승인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개 사미니에게 二歲學戒를 주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상가에 二歲學戒를 청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상가는 지금 아무개 사미니에게 二歲學戒를 주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대덕들은 상가가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26)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3하)

27)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4상)

28) Vinayapiṭaka 『五分律』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那耶』에서는 白二羯磨, 『十誦律』 『四分律』 『摩訶僧祇律』에서는 白四羯磨에 의해 식차마나의 二歲學戒, 즉 六法을 준다고 하였다.

화상으로 하여 二歲學戒를 주는 것을 허락하면 침묵하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째 갈마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해야 한다. 상가가 이미 승인하시니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二歲學戒를 주어 마치겠습니다. 상가가 침묵하여 승인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²⁹⁾

이상과 같이 二歲學戒를 주는 갈마를 마치면 6法戒를 준다. 육법계를 받은 식차마나는 2년 동안 육법계를 배워 수행해야 한다. 식차마나가 20살이 되거나 결혼한 여성이 12세가 되었다면 백사갈마를 하여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먼저 수계자를 계단 밖, 즉 들리지는 않고 보이기만 하는 장소에 세워 놓고, 계사³⁰⁾는 교수사³¹⁾를 뽑아야 한다. 들리지 않고 보이는 장소를 『摩訶僧祇律』은 空靜處,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는 屏處라 말하고 있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는 때에 이르렀다면 상가는 승인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개를 교수사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³²⁾

이상과 같이 一白羯磨(=白二羯磨)에 의해 뽑힌 교수사는 수계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障法을 질문한다. 그리고 교수사는 수계자에게 장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 10인의 상가에서 장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교수사는 계단에 돌아가서 比丘尼處에 서서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는 때에 이르렀다면 상가는 승인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미 교수하기를 끝냈으니 (그를) 오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알립니다.³³⁾

교수사는 수계자를 계단으로 오게 한 뒤에 衣鉢의 수지를 가르치고,³⁴⁾ 비구니 상가에 예

29)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4상-중)

30) 戒師는 羯磨師라고도 말한다. Vinayapitaka는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 『四分律』과 『十誦律』은 戒師, 『五分律』과 『根本有部律』은 羯磨師, 『摩訶僧祇律』은 戒師와 羯磨師를 함께 쓰고 있지만 4師 가운데에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31) Vinayapitaka는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 『四分律』과 『十誦律』은 教授師, 『五分律』은 教師, 『摩訶僧祇律』은 空靜處教師, 『根本有部律』은 屏教師라 이름하고 있다.

32)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4하)

33)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4하)

34) 각 율장에는 衣鉢의 受持를 가르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Vinayapitaka는 갈마사가 의

경하고 계사 앞에서 합장하고 수계를 다음과 같이 청하도록 해야 한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아무개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상가에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대덕 상가여, 저를 애민이 여기시어 拔濟하여 주십시오.³⁵⁾

이와 같이 수계자가 두 번, 세 번 청하면 계사는 10인의 상가에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가 이제 상가에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는 때에 이르렀다면 상가는 승인하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모든 難事를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³⁶⁾

계사는 수계자에게 지금은 진정할 때이며, 진실을 말할 때임을 알리고 교수사가 질문했던 難事를 다시 질문을 하고, 수계자가 難事가 없다고 말하면 계사는 상가에 구족계를 청하는 白을 하고 세 번에 걸쳐 구족계의 승인 여부를 묻는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상가에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의 말에 의하면 청정하여 아무런 難事가 없고, 나이는 20살이 되었고, 의발을 갖추었으므로 대중이 이제 이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대덕 상가는 이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침묵하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둘째, 셋째도 이와 같이 말한 뒤에 상가가 이미 승인하였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상가가 승인하였으니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³⁷⁾

식을 하기 전에 衣鉢을 수지시키고 있으며, 『四分律』은 교수사가 障法을 질문하고 나서 10인의 상가가 있는 계단으로 수계자를 오게 한 후 衣鉢의 수지를 가르친다. 『五分律』에서는 교수사가 장법을 질문하기 전에 衣鉢의 수지를 가르치고 있다. 『摩訶僧祇律』에서는 교수사의 障法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수계자가 계단으로 나가면 갈마사가 수계자에게 衣鉢의 수지를 가르치고, 『十誦律』 권46(『大正藏』 23, p.331중-하)에서는 수계자가 비구니상가에 예배하고 나서 화상비구니를 선임하기 전에 갈마사가 衣鉢의 수지를 가르친다.

35)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p.924하-925상)

36)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5상)

37)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5상)

이상과 같이 백사갈마를 하여 상가가 침묵을 하면 수계자의 구족계는 승인된 것이다. 이어서 계사는 비구니상가의 수계갈마를 結한다. 수계자는 卽日을 넘기지 않고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비구상가에 가서 구족계갈마를 받아야 한다.³⁸⁾ 우선 비구상가의 발에 예배하고, 右膝着地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상가에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상가는 저를 애민이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³⁹⁾

이와 같이 수계자가 세 번 말하면 계사는 위에서 물은 것과 같이 다시 물어야 한다.

“그대는 계를 배웠는가? 그대는 청정한가?”라고 묻고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다른 비구니에게 “계를 배웠는가? 청정한가?”라고 묻고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알려야 한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상가에 와서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의 말이 청정하여 모든 難事가 없고, 나이도 이미 찼고, 衣鉢을 갖추었고,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합니다. 만약 상가는 때에 이르렀다면 상가는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상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상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상가에 와서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의 말에 의하면 “청정하여 모든 難事가 없고, 나이도 이미 찼고, 衣鉢을 갖추었고,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하다”고 하므로 상가가 지금 이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나 상가는 이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침묵하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상가가 이미 승인하였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상가가 승인하여 침묵하였으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⁴⁰⁾

38) 『四分律』 권28(『大正藏』 22, p.764중)에서는 비구니상가가 구족계갈마를 끝내고 그 다음날에 비구상가에 가서 구족계를 받게 하였는데, 그 사이에 비구니들이 병이 들고, 신체상에 이상이 생겨 소경·병어리·절름발이 등이 되었다고 한다. 재가자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신체 이상자들을 출가시켰다고 상가를 비방하였기 때문에 비구니상가에서 구족계를 받고서 그날을 넘기지 말고 비구상가에서 구족계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한다.

39)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5상-중)

이상과 같이 구족계갈마가 모두 끝나면 계사는 수계자에게 8바라이와 四依法를 목숨이 다하도록 지킬 것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수계자에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이미 계를 받았다. 백사갈마가 법답게 성취되어 제 자리를 얻었고, 화상이 법답고, 아사리도 법답고, 二部상가도 구족하니, 교법을 잘 받들어서 교화하고, 복을 짓고, 탐을 수리하고, 불법승에게 공양하라. 아사리가 모두 법다우니 가르침을 어기지 말고, 배우고 묻고 경을 외우기를 부지런히 하여 불법에서 과위와 아라한외 과위를 얻어라. 그대들이 처음에 발심하여 출가한 뒤로 공로가 헛되지 않고, 과보도 끊이지 않으리라. 이 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화상이나 아사리에게 물어라.⁴¹⁾

이상의 내용은 계사가 수계자에게 二部상가에서 여법하게 백사갈마를 통해 수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수계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 밖에 모르는 것은 화상과 아사리에게 질문하도록 수계자에게 부촉하고 있다.

IV. 구족계의 규정

이 밖에 구족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비구니 바라제목차의 바일제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비구니는 법랍 12세가 되어야 화상의 자격을 갖추고 제자를 둘 수 있다. 만약 비구니가 법랍 12세 미만일 때 구족계를 주면 바일제에 해당한다.⁴²⁾ 그리고 법랍 12세가 된 비구니가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고자 할 때는 白二羯磨에 의해 비구니상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⁴³⁾ 만약 비구니 상가가 제자의 受具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가에 대해 싫어하거나 화를 낼 경우는 바일제에 해당한다.⁴⁴⁾ 이 밖에 비구니는 매년 제자를 둘 수 없으며,⁴⁵⁾ 一年에 2명의 제자를 둘 수 없으며,⁴⁶⁾ 제자를 두었다면 2년간 教誡를 해야 한다고 바일제법에 규정하고 있다.⁴⁷⁾

40)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5중)

41) 『四分律』 권48(『大正藏』 22, p.926상)

42) Vinayapiṭaka IV, p.329, 제74조, 『四分律』 권28(『大正藏』 22, p.761하) 제131조, 『五分律』 권13(『大正藏』 22, p.90하) 제102조, 『十誦律』 권45(『大正藏』 23, p.325중) 제106조, 『摩訶僧祇律』 권38(『大正藏』 22, p.533중) 제92조에 규정하고 있다.

43) Vinayapiṭaka IV, p.330, 제75조, 『四分律』 제132조, 『十誦律』 제107조에 규정하고 있다.

44) Vinayapiṭaka IV, p.331, 제76조, 『四分律』 제133조, 『五分律』 제109조에 규정하고 있다.

45) Vinayapiṭaka IV, p.336, 니율바일제법 제82조, 『四分律』 제138조, 『五分律』 제118조, 『摩訶僧祇律』 제106조에 규정하고 있다.

46) Vinayapiṭaka IV, pp.336-337, 니율바일제법 제83조에 규정하고 있다.

47) Vinayapiṭaka IV, 니율바일제법 제69조, 『四分律』 제129조, 『摩訶僧祇律』 제105조, 『十誦律』 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二歲學戒를 배우고 6法을 받은 정학녀로서 20세를 구족하고, 부모와 남편의 허락을 받고, 구족계를 줄 수 없는 조건인 障法에 저촉되지 않고, 상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四分律』에서는 임신한 여인⁴⁸⁾과 아기가 있는 여인⁴⁹⁾과 음란한 여인⁵⁰⁾에게는 구족계를 주지 말라고 하였으며,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⁵¹⁾에서는 비구니가 한번 계율을 버리고 세속에 간다면 다시 출가를 구할 수 없고, 출가와 구족계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계자에게 구족계의식을 할 때는 벽돌 위에 꿇어앉게 하지 말고 혹은 풀 위에 앉거나 작은 방석 위에 앉아서 계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여성의 몸은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⁵²⁾ 二部상가에서 구족계갈마를 받아야만 완전한 구족계가 성립하는 비구니는 야간에 화상비구니를 선임하는 갈마를 하여 제자를 거두어 대중으로 삼을 수 없으며,⁵³⁾ 만약 이를 어기고 제자를 둔다면 波夜提를 범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비구니는 비구니 상가에서 구족계갈마를 한 그날을 넘겨서 비구상가에서 구족계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의 수계는 한때 8敬法과 善來具足戒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비구니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상가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二部상가에서의 백사갈마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수한 경우인 遣使得은 어느 시기까지 시행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구니의 구족계는 二部상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성립되는데, 이는 비구니상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붓다의 제제시 비구니상가의 인원수가 늘어나면서부터 二部상가의 白四羯磨에 의한 구족계로 완비되었다.

V. 나오는 말

일반인이 어느 날 불법승 삼보에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그 귀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며 재가자로서 남는 방법이 있으며 한발 더나가 현재 자신의 생활을 접고 부처님과

113조에 규정하고 있다.

48) Vinayapīṭaka IV, 니올바일제법 제61조, 『四分律』 제119조, 『五分律』 제116조, 『根本說一切有部律』 제111조에 규정하고 있다.

49) Vinayapīṭaka IV, 니올바일제법 제62조, 『四分律』 제120조, 『五分律』 제117조에 규정하고 있다.

50) 『四分律』 제127조, 『五分律』 제112조, 『十誦律』 제115조, 『根本說一切有部律』 제160조에 규정하고 있다.

51)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권31(『大正藏』 24, p.358하)

52)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권31(『大正藏』 24, p.359중)

53) 『十誦律』 권46(『大正藏』 23, p.331중)

마찬가지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 수행자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의식을 출가라고 하며 정식 구성원이 되는 의식을 수구라고 한다. 따라서 승단을 유지 구성하는 정식 구성원인 비구 비구니는 수구식을 통하여만 배출할 수 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불교가 존속될 수 있고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니는 종교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서 필자는 비구니의 수구의 형태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비구니 수구의 여러 형태에 대하여 『毘尼母經』에서 설명되는 5종 수구인 師法受具・白四羯磨受具・遣使受具・善來受具・上受具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師法受具은 마하파자파티가 8敬法을 수지함으로써 출가와 구족계가 동시에 이루어져 비구니가 된 것을 말한다. 白四羯磨受具은 二部상가에서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구족계는 비구니 상가가 성립된 후 비구니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비구니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 행해진 수계갈마이다. 遣使受具은 대리인을 보내 비구상가에 가서 구족계를 받게 하여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遣使受具은 二部상가에서 백사갈마를 통한 수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족계의 형태로서 상가에 가서 구족계를 받아야 하는 수계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 염려하여 대리인을 보내서 구족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善來受具은 붓다가 ‘잘 왔구나, 비구니여[善來比丘尼]’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善來受具은 摩登祇女가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 須陀洹果를 얻고 붓다에게 출가를 구함에 자연히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가사와 발우가 홀연히 몸에 갖추어져 구족계를 받은 것을 말한다.

上受具은 붓다의 설법을 듣고 번뇌가 다하여 아라한이 된 것으로 수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으므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수계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가장 잘 완비된 것이 백사갈마수구이다. 백사갈마수구는 二部상가에서 두 번 행하며 비구상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붓다의 재세시 비구니 상가의 인원수가 늘어나면서부터 二部상가의 白四羯磨에 의한 구족계로 완비되었다.

참고문헌

Ariguttara-nikāya(PTS)

Vinaya-piṭaka(PTS))

Samantapāsādikā, Buddhaghosa's Commentary on the Vinaya Pitaka, (PTS)

『南傳』 4권,

『五分律』 권29(『大正藏』 22)

『僧祇律』 권30(『大正藏』 22)

『四分律』 권48(『大正藏』 22)

『十誦律』 권40(『大正藏』 2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권29(『大正藏』 24)

Mohan Wijayaratna. *Buddhist Monastic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V. Bapat (ed.) *2500 Years of Buddhism*. New Delhi: Publications Division, 1987.

Peter Harvey.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Walpola Rahula. *History of Buddhism in Ceylon*. Third Edition, Dehiwala: The Buddhist Cultural Centre, 1993, First Edition 1956.

사사키 시즈카 지음 · 원영 옮김.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서울: 민족사, 2007.

지음 이자람 옮김, 『인도불교의 변천』,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7

水野弘元. 『釋尊の生涯』. 東京: 春秋社, 1972, 増補 1985 新裝版.

이자람, 「초기불교 교단의 종교의식과 생활」 『불교평론』 14, 서울: 불교시대사, 2003

「초기불교의 계단설치와 二部僧制」 『近代韓國佛教律風振作과 慈雲大律師』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李秀昌(摩聖). 「比丘尼 八敬法에 대한 考察」, 『불교학연구』 제15호, 불교학연구회, 2006. 12

李智冠. 『韓國佛教의 戒律傳統』.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前田惠學. 『原始佛教聖典の成立史的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64

塚本啓祥. 『初期佛教教團史の研究-部派の形成に關する文化史的考察』. 東京: 山喜房佛書林, 1966, 1980 改訂増補版.

平川彰 지음 · 박용길 옮김. 『율장 연구』, 서울: 土房, 1995.

平川彰 지음 · 釋慧能 옮김. 『원시불교의 연구』, 서울: 민족사, 2003.

平川彰. 『二百五十戒の研究 I』, 東京: 春秋社 1993

『二百五十戒の研究 II』, 東京: 春秋社 1993

『二百五十戒の研究 III』, 東京: 春秋社 1994

『二百五十戒の研究 IV』, 東京: 春秋社 1995

『比丘尼律の研究』, 東京: 春秋社 1998

平川彰 지음 釋慧能 옮김 『원시불교의 연구』, 서울: 민족사. 2003

원고접수: 2008년 1월 30일 1차심사: 2월 5일 게재승인일: 2월 15일

연구자 소개: 신성현

- ① 전공: 불교윤리 / 소속: 동국대학교
 - ② 관심영역: 불교윤리학, 계율학, 불교교단사
 - ③ 주요논저: 『경북학의 정립과 정신문화사 연구』
 - ④ E-mail: neostellar@hanmail.net
-

Abstract

The Various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Bhikkhunī - Upasampadā

Shin, Sung-hyun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There are two ways for lay-followers to join Community. The one is entering the priesthood, and the other is *upasampadā*. The former is becoming a member temporarily, however the latter is becoming regular. That is why *upasampadā* has the religious importanc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the Buddhist group without its members although Buddha's Discourses are worthful.

This paper try to take a note to the types of *upasampadā*. It is analyzed into five types in Vinaya. Each type has a distinctive notion, and one of them is *bai-si-jia-mai*(白四羯磨), the best formed type. During the Buddha's period, as Bhikkhunī saṅgha grows, it is formulated.

Key words : Bhikkhunī saṅgha, *upasampadā*, Vinaya